

# 인간학에 도전하는 동물학

## ‘대 유인원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형민(호남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대 유인원 프로젝트
- III. 법적 성격의 해명
- IV.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윤리적 함의
  - 1.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
  - 2. 평등과 차이의 윤리
- V. 싱어의 평등고려의 원칙
  - 1. 동물해방과 종중심주의
  - 2. 싱어에 대한 비판
- VI.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003-A00063

1993 veröffentlichte Singer gemeinsam mit Paola Cavalieri einen Aufsatzsammenband, der als politisches Manifest präsentiert wird. Das heißt ‘The Great Ape Project’. Darin wird eine Deklaratio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as Recht auf Leben, das Recht auf Freiheit und das Recht auf Schutz vor Folter und Gewalt für Schimpansen, Gorillas und Orang-Utans gefordert. Der Aufruf wird mit Beiträgen von vierunddreißig WissenschaftlicherInnen unterstützt. Unter den AutorInnen sind u.a. die bekannte Ethologin Jane Goodall, der Philosoph und Tierrechtler Tom Regan, der Sonderpädagoge Christoph Anstötz und der Evolutionsbiologe Richard Dawkins. Mittlerweile könnte Neuseeland das erste Land werden, in dem diese Menschenrechte für die höheren Primaten Geltung bekommen. Nach Peter Singers Argumentation sind auch Menschen im klassifikatorischen Sinn Große Menschenaffen. Der Ausschluß der anderen Menschenaffen von den für alle menschlichen Menschenaffen geltenden Menschenrechten sei daher willkürlich und ungerechtfertigt. Sie wird gegenwärtig im Licht von neuen Untersuchungen und Möglichkeit auf den Gebieten der Evolutionsbiologie diskutiert. Besonders geht es um die dichotome Gegenüberstellung von Mensch und Tier. Des weiteren kommt dem Begriff der Gleichheit im Befreiungsbewegung eine große Bedeutung zu. Peter Singer thematisiert die Unterdrückung von Tieren aufgrund ihrer Spezieszugehörigkeit und verlangt ihre Gleichstellung. Aber es stellte sich die Frage, welche Bedeutung dem Rekurs auf Gleichheit generell in dieser Bewegungen zugemessen werden kann. Als Ergebnis meiner Untersuchung ist festzustellen, daß Peter Singer in seiner Theorie eine neue Dichotomie zwischen Personen und Nicht-Personen etablieren würde, auch wenn er veranlaßt, auf die dem menschlichen Handeln am Tier, besonders an den drei anderen Großen Menschenaffenarten Schimpanse, Gorilla und Orang-Utan zugrunde liegenden moralischen Prinzipien und Normen zu reflektieren.

**Keywords:** Animal Liberation, Animal Rights, Animal Subjectivity, equality, Interests and Rights, person, Practical Ethics, Preference Utilitarianism, Specialism, The Great Ape Project,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Sociobiology

---

## I. 들어가는 말

그동안 동물은 수의학자과 같은 전문가의 주제였으나 동물들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인간사회는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최근 동물윤리적 논의는 동물보호나 동물사랑을 넘어 동물의 권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3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파올라 카발리에리(Paola Cavalieri)가 정치적 성격을 띤 ‘대 유인원 프로젝트’(Great Ape Project)를

선언하자 동물윤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선언서는 3대 유인원인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을 인격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생명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물론 고문의 금지까지 요구하였다. 34명의 학자들이 이 선언서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는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동물윤리학자 톰 레이건, 특수교육학자 안스퇴츠,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뉴질랜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받아들여 침팬지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준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동물학은 인간학의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sup>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Ulpian)은 동물을 포함한 포괄적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고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안 1세(Justinian I)가 이를 시민법에 받아들였다. 후에 철학자 루소와 쇼펜하우어가 동물의 권리를 변호하였으며 지난 세기에는 영국의 헨리 솔트(H. Salt)가 동물의 권리라는 책을 써 동물의 보호를 법적으로 요구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인 1894년 독일의 브레겐저(I. Bregenzer)가 동물의 윤리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최근 90년대 이전까지 영미권에서는 린제이(A. Linzey, *Animal Rights*, 1976), 파인버그(J. Feinberg,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 1976), 레건(T. Regan, *Animals and the Law*, 1979; *The Case for Animal Rights*, 1983), 싱어(P. Singer, *Animal Liberation*, 1977), 레이첼스(J. Rachels, *Ethics and Animals*, 1983) 등의 의해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지만 독일에서는 뢰퍼(E. Loeper, *Tierrechte und Menschenpflichten*, 1984), 토이취(G. Teutsch, *Tierversuche und Tierschutz*, 1983) 등에 의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물에게도 권리와 인권을 수여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분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 역시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싱어는 3대 유인원을 배제한 인권이해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과 함께 ‘평등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이다. 생물분류학, 행동연구학, 그리고 생명공학 등이 내놓은 새로운 연구결과들은 인간과 동물을 이원론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험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는 평등의 개념이다. 평등한 인격체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주창자들은 동물의 압제를 인종차별과 진배없는 인간 종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동물의 해방과 평등한 삶을 요구하였다. 본 논문은 대 유인원 프로젝트가 갖는 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싱어의 실천윤리적 평등이해와 비판적으로 논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뉴질랜드 국회는 1999년 말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실험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안을 수정동의 85로 통과시켰다. 이는 인간의 더 높고 고상한 관심과 필요라는 이유로 동물에게 어떤 상처도 가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S. Walden, “Menschenrechte für Menschenaffen nur in Neuseeland?”, M. Herberhald; u.a(hg.), *Menschenrechte für Menschenaffen? Was Tier und Mensch unterscheidet*, Paderborn 2003, 63-72 참조.

2)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역사에 대해 T. Regan, “Ethical Perspectives on the Treatment and Status of Animals”, W. T. Reich(Ed.), *Encyclopedia of Bioethics: Vol.I*, New York 1995, 158-169;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건국대출판사 2005, 167-188.

## II. 대 유인원 프로젝트

그동안 서구의 동물보호론자들은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기본권을 부여하려고 시도해왔다. 영국에서는 1978년 세계동물권선언이 선포되었고, 1979년에는 국제동물연맹(United Animal Nations)이 결성되기도 했다.<sup>3)</sup>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서구의 동물권운동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1993년 6월 런던에서 유인원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리운동으로 시작하였다.<sup>4)</sup> 유인원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유인원을 위한 세 가지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이의 생물학적, 윤리적, 법적 정당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 선언서는 인간을 유인원으로 보고 인간외의 유인원과 평등공동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전의 동물선언서와는 다르다. 대 유인원 프로젝트가 아직 우리 학계에 소개되지 않는 만큼 그 전문과 해설을 여기에 게재한다.<sup>5)</sup>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모든 유인원(인간,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을 포괄하는 평등의 공동체로 확대될 것을 요구한다. “평등의 공동체”는 도덕적 공동체이며, 그 가운데 우리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enforceable at law) 분명한 기본적 도덕원리나 권리를 인정한다. 다음의 것들이 이 원리나 권리에 속한다.

### (1) 생명권

평등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 평등공동체의 일원은, 예컨대 자기방어와 같이 매우 엄격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

### (2) 개인적 자유의 보호

평등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의 자유는 임의로 박탈될 수 없다. 그들이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었을 경우 즉시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형벌을 받을 만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이들의 체포는 단지 그것이 그들 자신에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자유롭게 둘 경우 분명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공공(public)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락된다. 그런 경우에 평등공동체의 구성원은 직접 또는 만약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 (3) 고문의 금지

악의를 품거나 타인의 헛된 이익을 위해 평등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고의적으로 모진 고통을 주는 것을 고문으로 간주하며 이런 행동은 부당하다.

3) G. Teutsch, *Mensch und Tier - Lexikon der Tierschutzethik*, Göttingen, 1987, 171f.

4)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성립사를 위해서는 P. Cavalieri;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H. Kuhse(ed.), *Unsanctified Human Life. Essays on Ethics Perter Singer*, Blackwell, 2002, 128-141 참조.

5) P. Cavalieri;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4-7; P. Cavalieri;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H. Kuhse(ed.), *Unsanctified Human Life. Essays on Ethics Perter Singer*, Blackwell, 2002, 128-141; V. Sommer, *Von Menschen und anderen Tieren. Essays zur Evolutionsbiologie*, Herzel, 2000, 53ff.

### Ⅲ. 법적 성격의 해명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대표적 발의자인 싱어는, 우리가 타인과의 도덕적 평등의 경계선을 인간이라는 사실보다 사회적이며 감성적 삶을 살아가는 지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찾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에게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평등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싱어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평등성을 단지 우리 고유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속한 그들의 특징과 삶의 양식이 가장 비슷한 종까지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였다.<sup>6)</sup> “우리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유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유인원 프로젝트의 변호인들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의 기본권을 위한 그들의 주장이 “인류가족 모두”를 고려하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서와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7)</sup>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생명권, 개인적 자유의 보호, 고문의 금지라는 세 가지 기본권을 요구한다.

#### 1) 생명권

제1항 생명권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무엇보다 살해금지 조항이다. 다만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살해는 허락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보호권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서와 같은 법적 권리로 실행되기를 원한다면 보호권의 위탁자에 대한 규명 곧 법의 주체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생명권은 세계인권선언서 제3조와 같이 개인의 기본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 2) 개인의 자유보호

제2항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나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구속된 자의 자유로운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슈뢰터(M. Schrüter)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자유요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단지 이동의 자유만을 의미한다.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제1항과 제2항은 오직 인간을 제외한 유인원들의 필요와 관심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동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받을 만한 연령”이라는 말과 같은 자기책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9)</sup> 사실 형벌이 없이는 죄도 없다.

6)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1.

7) 독일에서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대 유인원을 위한 인권선언으로 번역하였다. P. Cavaliere; P. Singer(hg.), *Menschenrechte für Große Menschenaffen*, München, 1996. 사포치스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가 단순히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법적 변환을 강조한다. S. Sapontzis, “Aping Persons - Pro and Con”,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269f. 참조.

8)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M. Ishay,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길 2005, 687.

9) M. W. Schröder, “Menschenaffen und Rechte. Kritische Bemerkung zur Deklaration über die Großen Menschenaffen von P. Cavaliere und P. Singer”, 399.

### 3) 고문금지

제3항은 두 가지 종류의 고문행위를 금지한다. 첫째는 악의로 타인에게 고통, 특히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을 금지한다. 둘째는 동물실험과 같이 오직 과학적으로 추정된 이익을 얻고자 타인에게 고통 주는 일을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고문이요 불법이다.

## IV.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윤리적 함의

### 1.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

오랫동안 인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서구의 오랜 정신사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장 고전적 이론은 자연의 사다다리(*scala naturae*)를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영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이다.<sup>10)</sup>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인원에 대한 기록도 남겼는데, 유인원, 긴꼬리원숭이, 비비속 같은 몇몇 동물은 그 본성상 인간이나 네발 달린 동물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부티케츠(F. M. Wuketits)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적 의미의 진화나 종의 역사적 친족성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자연과 생명체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서 볼 때 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하다고 주장한다.<sup>11)</sup> 이분법적 사고는 누구보다 데카르트에 의해 결정적인 기초를 얻었다. 그는 자연을 신에 의해 늘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거친 기계로 보았다. 데카르트의 영향 하에 대체로 오늘까지 인간과 동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연성과 동물성을 평가 절하했다. 예컨대 최근까지 동물생태학이 동물의 태도를 인간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동물은 오직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원료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고 동물성이란 말은 야수성을 의미할 뿐이었다. 1960년 구달이 유인원에 대한 책을 처음 저술했을 때 출판업자는 그 또는 그녀라는 말 대신 그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강요당한 일도 있다.<sup>12)</sup>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은 진화론적 사회철학에 근거한 생물학, 생태학의 발달이다. 특히 사회생물학의 발전은 인간만이 아니라 각각의 종이 특별한 위치를 가지며 그렇기에 유일한 존재라는 입장을 강화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을 거절한다. 그러면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대표적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sup>13)</sup>

- 
- 10) M. Linnemann(hg.), *Brüder - Bestien - Automaten*, Erlangen 2000, 42f.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서구사상가들의 생각을 모은 것으로 단편적 동물이해를 위해 유용하다. 아퀴나스는 동물과 식물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는 오직 인간을 위해 그렇다고 주장하며, 만약 누군가 이웃의 소를 죽였다면 잘못된 행동이나 소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소유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기타 T. Bastian, 『가공된 신화, 인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사유하다』, 송성현 역, 시아출판사 2005; A. Linzey; D. Yamamoto, *Animals on the Agenda. Questions about Animals for Theology and Ethics*, London 1998, 67ff., 80ff. 참조. 동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해 김형민, 동물의 미래와 기독교 신앙, 기독교사회윤리 제3집 2000년, 131-168.
- 11) F. M. Wuketits, *Der Affe in uns. Warum die Kultur an unserer Natur zu scheitern droht*, Stuttgart 2002, 91f.
- 12) J. Goodall, *Ein Herz für Schimpansen - Meine 30 Jahre am Combe-Strom*, Hamburg, 1991, 24.
- 13)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적 논증에 주력하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의 종류에 대해 L. Rogers; G. Kaplan, ALL ANIMALS ARE NOT EQUAL. "The Interface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Legislation for Animal Rights", C. Sunstein; M.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2004, 179f.

## 1) 폴커 소머

진화생물학자 소머(V. Sommer)는 이제까지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가 양면적으로 파악되었음을 지적한다.<sup>14)</sup> 말하자면 유인원은 인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험실에 갇혀 인간대신 시험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는 자연과 문화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서구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동물을 언제나 문화가 아닌 자연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과 문화에 대한 관계 역시 양면적이다. 문화가 자연을 개량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파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문화낙관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인간의 결핍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문화회의주의는 인간의 문화적 성취를 오히려 퇴화현상으로 본다. 하지만 서머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핍된 자연이 문화를 통해 완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인간의 자연은 인간이 꿈꾸는 낙원과 같은 조화의 모습을 보여주지는커녕 문화를 통해 왜곡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적 특징을 동물적 특징과 구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는 주장은 허구라고 판단한다. 결국 여러 종간의 랑데부를 목격하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분법은 원죄와 같은 것이며 종족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같이 어떤 이즘을 만들어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본질상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종차별주의에도 해당된다.<sup>16)</sup>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자연적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유인원은 인격체이며 인간과 비슷한 인간과 닮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 2) 재레드 다이아몬드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생리학자 다이아몬드(J. Diamond) 역시 인간과 유인원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방식이 유인원의 세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sup>17)</sup> 왜냐하면 인간은 제3의 침팬지로서 약간 하등한 유인원(고릴라, 오랑우탄, 긴팔원숭이)과 구분되는 약간 고등한 유인원일 뿐이다. 그의 주장은 영장류의 분류표를 유전적 거리와 분기의 연대에 따라 구분하는 분기분류학(cladistic)의 분류식을 따른 결과이다. 분기분류학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별도의 과나 속을 형성하지 않고 침팬지나 피그미침팬지에 속해 있다. 그렇기에 사람은 호모(Homo)로 침팬지는 팬(Pan)을 구분해온 전통적인 동물학의 속명을 거절하고 침팬지인 호모 트라글로다이트스(Homo troglodytes)를 제1의 침팬지로, 피그미침팬지인 호모 패니스쿠스(Homo paniscus)를 제2의 침팬지로, 그리고 인간 곧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를 제3의 침팬지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런 점에서 다

- 
- 14) V. Sommer, *Von Menschen und anderen Tieren. Essays zur Evolutionsbiologie*, Herzel, 2000, 33-56.  
 15) 부티케츠는 인간은 원래 자연보호자가 아니라 타고난 약탈자로서 지금까지 대량학살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친다. F. M. Wuketits, 『멸종. 사라진 것들』, 두행숙 역, 들녘 2003, 112ff.  
 16) V. Sommer, *Von Menschen und anderen Tieren. Essays zur Evolutionsbiologie*, 55.  
 17) J. Diamond, "The Third Chimpanzee",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97f.  
 18)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제3의 침팬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간의 DNA가 침팬지의 DNA와 98.4%가 같다는 예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287개의 단위 수까지 인간과 침팬지는 동일함을 말한다. 위의 글, 95.

이아몬드든 사람이 실험에 사용할 수 없다면 침팬지도 마찬가지라며 이제까지 인간이 설정해 놓은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 경계의 윤리적 한계성을 지적한다. 만약 고등한 지능이나 고도의 사회구조, 또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 등을 윤리적 척도로 삼는다면 인간과 동물의 전통적 분류식은 더 이상 윤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3) 리처드 도킨스

진화생물학자 도킨스(R. Dawkins)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자신이 비연속적 정신(discontinuous mind)이라 부른 종중심주의적 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sup>19)</sup> 인간이 유인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믿고 동물생명의 가치를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는 종중심주의가 빠져있는 경박한 이중도덕이라고 판단한다. 도킨스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비연속성을 강조하는 종중심주의가 생겨난 연유는 생명진화의 과정에서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 종(ring species)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인간을 유인원의 분류군에서 제외시키는 근거도 인간과 유인원을 이어주는 중간존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팬지는 분명 인간과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분자적 증거가 우리의 공동조상이 500~700만 년 전, 즉 대략 50만 세대 전에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존재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며 윤리적 판단 시 중간존재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프란츠 드 발

유인원의 도덕성은 지난 70년대부터 진화윤리학이 집중해서 연구해온 주제로서, 유인원이 이기적 생존기계가 아닌 동정심을 품고, 감정능력이 있으며, 호혜적 관계를 맺고 사는 문화적이며 도덕적 존재로 볼 수 있는지를 탐구해왔다.<sup>21)</sup> 네덜란드 출신의 영장류 연구가 프란츠 드 발(Frans de Waal)은 누구보다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그는 유인원에 대한 다양한 관찰을 근거로 진화가 도덕의 전제가 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sup>22)</sup> 특히 그의 책 『좋은 원숭이』에서 여러 예를 통해 진화가 동물의 왕국, 특히 유인원의 세계에서 도덕의 전제들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침팬지 공동체는 사회적 조직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인간의 공동체와 흡사하다. 그들에게서 정치적 책략은 물론 거짓과 사기 그리고 권력투쟁, 연합, 화해의 제스처까지 볼 수 있는데, 권력쟁취를 위한 침팬지 폴리틱스가 피를 흘리지 않고 끝나는 것이 특이하다. 수컷 침팬지들은 힘이 세고 다른 침팬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19) R. Dawkins, “Gaps in the Mind”,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80f.

20) 위의 글, 84. 생명의 기원에 대한 도킨스의 연구 Dawkins, R., 『조상이야기.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이한음 역, 까치, 2005 참조.

21) 진화윤리학에 대해서 김형민, “진화윤리학의 규범적 논증의 가능성”, 종교연구 제32집 2003년 가을, 131-154 참조.

22) F. de, Waal, 『침팬지 폴리틱스』, 황상익 외역, 바다출판사 2004; F. de, Waal, 『원숭이와 초밥요리사』, 박성규 역, 수희재 2005; F. de, Waal, 『내 안의 유인원』, 이충호 역, 김영사 2005; F. de Waal; F. Lanting, 『보노보』, 김소정 역, 새물결, 2003.

23) F. de, Waal, *Der gute Affe. Der Ursprung von Recht und Unrecht bei Menschen und anderen Tieren*, München 2002. 이 책의 영어본 제목은 호인(Good Natured)이다.



물러서 서로 포옹하고 입 맞추며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다. 드 발은 현생인류가 500만 년 전 침팬지와 같이 폭력적이었으나 전쟁을 통해 순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는 랭엄(R. Wrangham)의 입장을 비판하고, 침팬지도 인간같이 관용과 상호도움을 주고받은 사회적 동물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여러 실제적 예를 드는데, 사고로 손발을 상실한 일본의 짧은 꼬리 원숭이 모주(Mozu)가 다섯 마리의 새끼를 잘 기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인원의 도덕적 지성을 주장한다.<sup>24)</sup> 뿐만 아니라 유인원의 세계에서 정의의 개념을 끌어들이기 위해 침팬지 메이(Mai)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드 발은 평소 다른 침팬지에게 관대했던 메이와 욕심 많은 지미(Gwimmie)보다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양식을 얻는 것을 관찰한 후, 이를 침팬지 세계가 보여준 정의감에 대한 산 증거로 삼았다. 그는 결국 다음의 결과에 도달한다. “동물도 도덕적인가? 우리는 단순히 그들 역시 도덕성이라는 성탑 일층에 살고 있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적절한 제안까지도 거절하는 것은 총체적 구조를 편협한 관점으로 보는 태도일 뿐이다.”<sup>25)</sup>

## 5) 제임스 레이찰스

다윈의 아들, 프란시스(Francis)는 아버지 다윈이 일생동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전한다. 첫째는 동물을 잔인하고 무감정하게 다루는 인간의 행동이요 둘째는 노예제도이다. 다윈은 말을 심하게 다루는 마부를 책망했는가 하면 자기 가정에서는 동물의 생체해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지했다는 일화도 있다. 레이찰스(J. Rachels)는 이 같은 다윈의 삶을 소개하면서 다윈의 과학적 연구는 도덕적 꿈을 실현하려는 한 과학자의 결실이라고 판단하고, 다윈의 세계관이 유인원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sup>26)</sup> 다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구별된 존재라는 생각대신 동물과 공동의 기원과 특질을 나누고 있다는 생물학적 인간론을 제시하였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유인원과 친족이다. 레이찰스는 다윈의 분류에 따라 인간과 유인원의 친족성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논거에 따라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평등성을 주장한다. 특히 유인원과 같은 고등동물들이 미성숙하나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인해야 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 자유롭게 살 권리, 그리고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sup>27)</sup>

## 2. 평등과 차이의 윤리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의 거절은 필연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평등에 대한 윤리적 숙고를 요청한다. 특히 인간과 유인원과의 관계에서 숙고해 볼 때 평등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선도자인 싱어와의 논쟁의 장에서 비판적으로 다룰 것이다.

24) 위의 책, 17f.

25) 위의 책, 259.

26) J. Rachels, “Why Darwinians Should Support Equal Treatment for Other Great Apes”,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152-157.

27) 위의 글, 155.

다만 여기서는 동물해방을 노예해방이나 여성해방과 비유적으로 설명한 상어의 시도를 염두에 두면서 인간과 동물의 평등 이전에 남녀의 관계에서 평등과 차이의 상관적 의미를 살펴보자.<sup>28)</sup>

역사적으로 남녀의 평등에 대한 요청은 남녀의 차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려는 입장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은 여성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오직 여성의 출산 능력만을 그 특징으로 본다. 1789년 프랑스 혁명도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여성이해 역시 여성을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있었기에 여성과 인권과 시민권의 공유는 거절되었다.<sup>29)</sup> 그렇기에 여성해방은 여성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노력으로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헌법상으로는 여성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실제로 여성이 평등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평등하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통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가르쳐 베커-슈미트(Becker-Schmidt)는 ‘괄호 치기의 곡예’라고 비꼬았다.<sup>30)</sup> 남성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존재라기보다 비슷한 존재로 추정되기 일쑤였다. 혹 남성이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여도 오직 남성의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추상적 평등요청은 남성의 가치기준을 더욱 절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녀 간의 평등보다는 남녀 간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여성의 고난체험의 능력이나 감정과 같은 요소들이 강조된다. 하지만 여성적인 것을 재평가하고 남성적 문화와 독립된 여성만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남녀의 이분법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남녀의 차이를 존재론적으로 보든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보든 결국 남녀의 공통성을 경시하게 된다. 또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오직 한 부류의 폐쇄된 여성들의 집단으로 암시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말하자면 서구 중심적이며 백인 중심적인 페미니즘은 그들만의 폐쇄적 집단이 되어 다시 흑인여성집단과 분리될 수 있다. 앞에서는 남녀 간의 일치성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여성 간의 일치성이 문제시된다.

이러한 남녀의 평등과 차이를 중재하는 제3의 기준(*tertium comparationis*)으로 종종 인간존엄성이 제시된다. 하지만 존엄성의 개념도 일치성 이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즉 이 개념이 보편적이며 성중성적 개념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역시 사회의 권력관계나 능력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남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로만으로는 남녀의 평등성을 실제로 논증하기 어렵다. 유고슬라비아 사태가 보여주었듯 남자들은 제 멋대로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도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평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평등개념은 온갖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맥किन(C. Mackinnon)은 인권 대신 시민권을 요구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평등은 비

28) 이하의 내용 H. Pauer-Studer, *Einführung in die Ethik*, Wien 2003, 129-133; C. Heinzlmann, *Der Gleichheitsdiskurs in der Tierrechtsdebatte. Eine kritische Analyse von Peter Singers Forderung nach Menschenrechten für Große Menschenaffen*, Stuttgart 1999, 8ff. 참조.

29) A. Maihofer, “Der Ausschluß der Frauen aus den Menschenrechten - Die Menschenrechtserklärung von 1789 aus feministischer Perspektive”, *Frankfurter Hefte* 6/1989, 630.

30) R. Becker-Schmidt, “Frauen und Deklassierung - Geschlecht und Klasse”, B. Ursula(hg.), *Klasse Geschlecht. Feministische Gesellschaftsanalyse und Wissenschaftskritik*, Blefeld 1989, 231.

합리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라면, 시민권의 관점에서 평등은 그 보다는 억압의 제거와 함께 문화적 분리를 시인하는 문제이다.”<sup>31)</sup> 즉 남녀 간의 분명한 차이를 차별 없이 인정하는 문제이다.

남녀 간의 절대적 평등요구는 사실상 실재하는 차이를 부인하게 되고, 역으로 차이의 일방적 강조는 남녀의 분절화, 이분법화, 계층화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 둘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첫째, 절대적 평등 대신 어떤 구체적인 점에서의 일치성과 유사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의 차이가 곧장 서로 다른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서 차이의 문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치들이 형성된 사회역사적 맥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녀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보다는 중재가능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보편화라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을 염두에 두고 보편화의 한계를 새롭게 추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평등의 문제가 싱어의 철학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자.<sup>32)</sup>

## V. 싱어의 평등고려의 원칙

### 1. 동물해방과 종중심주의

일찍부터 동물해방을 실천윤리학의 중심과제로 제시하고,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피터 싱어는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인종차별이나 종차별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처럼 같은 종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종차별주의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sup>33)</sup> 그는 평등의 이념이 노예해방과 여성해방 등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도구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한다.<sup>34)</sup> 하지만 이제 평등의 원리는 인간의 공동체를 넘어 인간외적 존재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보면 남녀의 평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평등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평등에 대한 주장은 지성, 도덕성, 합리성과 같은 지성적 위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평등은 기본적 도덕원리가 아니라 사실주장”이라고 단언한다.<sup>35)</sup> 이에 따라 싱어는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의 원

31) C. MacKonnon, “Kriegsverbrechen-Friedensverbrechen”, S. Stephen; H. Susan(hg.), *Die Idee der Menschenrechte*, Frankfurt am Main 1996, 126.

32) 싱어의 생명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U. Wolf, *Das Tier in der Moral*, Kolstermann 2004, 43ff.; P. Mayr, *Das pathozentrische Argument als Grundlage einer Tierethik*, Münster 2003, 234ff.; H. Hoerster, *Haben Tiere eine Würde? Grundfragen der Tierethik*, München 2004, 43-58. 필자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공동 편집자인 카발리에리(P. Cavlieri)의 평등권리론을 별도로 다루려 했으나 지면상 다음 연구를 미룰 수밖에 없다. 카발리에리는 신체적 자유의 보호와 같은 부정적 기본권의 이념을 근거로 인간과 중간영역에 있는 존재들의 인권을 옹호한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P. Cavaliere, *Die Frage nach den Tieren. Für eine erweiterte Theorie der Menschenrechte*, Erlangen 2002, 153ff. 참조.

33) P. Singer, “All Animals are Equal”, H. Kuhse; P. Singer, *Bioethics: An Anthology*, Oxford 1999, 461-470;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1999, 36ff.; ; A. Flury, *Der moralische Status der Tiere. Henry Salt, Peter Singer und Tom Regan*, Freiburg; München 1998, 112-170; 한면희, 『환경윤리. 자연의 가치와 인간의 의무』, 철학과 현실사 1997, 9ff.

34) 이는 싱어가 미즐레이(M. Midgley)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309. “평등의 이념은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이다……. 개혁을 위해 종종 필요한 것과 같이 그것은 제한된 영역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35) P. Singer, 『실천윤리학』, 황경식 외역, 철학과 현실사 1997, 42, 78.

칙'을 주장하는데, 말하자면 도덕적 판단 시 개인적이고 과당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들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도덕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sup>36)</sup> 싱어의 평등의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동물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고려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사실적으로 동일한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익 그 자체이다. 싱어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익관심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이익관심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곧 감각(sentience)이다. 오직 감각적 존재만이 이익관심을 갖기 때문에 감각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싱어에게 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가능한 경계선이 되는 이유이다.”<sup>37)</sup> 동물은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익관심을 갖기에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임의적이고 차별적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해 싱어는 종종심주의(Speciesism)란 말을 사용한다.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면 육식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종종심주의자들이라 불릴 수 있겠다. 윤리적 행위가 나와 너를 넘어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익이 단지 그것이 나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sup>38)</sup>

이런 주장은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더 높은 의미에서의 평등의 산출을 뜻한다.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에 대한 공리주의적 요구에 따라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최대의 선을 산출하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다. 평등의 원리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외적 생명체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싱어는 특히 고통을 느끼는 각 종의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싱어는 인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다. 그의 인격개념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가 제안한 인격체란 의식이나 감각이 없는 존재나 의식을 느끼는 존재와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와는 달리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의식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지적 존재를 말한다.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무엇을 소원하며,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존재이다. 인간이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생명체이다.<sup>39)</sup> 싱어는 침팬지, 오랑우탄, 고

36) 위의 책, 43.

37) 위의 책, 84.

38) 위의 책, 33.

39) 인격체 외에 의식만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 여기는 중앙 신경조직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의식하지는 못하나 본능적으로 쾌감을 추구하는 존재를 말한다. 싱어는 공리철학에 따라 쾌락이나 고통을 한 가치 표현이라고 보고, 즐거움과 쾌감을 추구하는 생물체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의식이나 과거와 미래를 소유한 구별된

릴라 같은 유인원을 인간과 동등한 인격을 소유한 생명체로 인정한다. 싱어는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은 사고 능력이 있으며,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다른 동료들과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며, 풍부한 사회적, 정서적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sup>40)</sup> 뿐만 아니라 싱어는, 유인원의 실재가 종의 경계가 임의적으로 나누어졌음을 보여주는 이상적 사례로서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인간과 다른 종들 간의 틈새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희망한다.<sup>41)</sup> “대형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인간이 아닌 인격체 중에서 가장 명백한 사례들일 수 있다.”<sup>42)</sup>

요약하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는 높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서로 속이고, 돌을 던지고, 계획을 짜서 사냥에 나서며, 자기보다 약한 다른 종류의 원숭이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타 원숭이 족과 처참한 종족 싸움까지 벌인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볼 때 오만 년 전에는 인간과 공동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를 유인원이라 부르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에게도 인권의 수여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동물시험은 중지되고 인간과 같이 이들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sup>43)</sup> 싱어는 이를 ‘인간정신의 점진적 계몽’이라 선언한다.<sup>44)</sup>

## 2. 싱어에 대한 비판

싱어는 여러 종의 생명체를 계급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나누었다. 즉 한 존재가 인격체로 볼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인격존재의 특징을 영향력 있게 성취할 수 있을 때라는 뜻이다. 이 분류에 따라 싱어는 태아, 유아, 정신박약아, 혼수상태에 있는 식물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그 반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고래 그리고 돌고래 같은 고도의 고등동물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아직 의식이 발달되지 않고 이와 함께 그 자체로 가치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18주가 지나지 않은 태아의 임신중절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싱어는 주장한다. 후기의 태어나 신생아도 인격체가 아닌 의식을 느끼는 존재로 취급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싱어의 윤리체계에서 동물 이외의 식물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싱어의 입장이 가져온 실천적 결과는 매우 혼란스럽다.

첫째, 싱어의 새로운 인격개념은 임신중절과 같은 인간의 생명윤리만이 아니라 동물의

---

존재자가 아니기에 교환 내지 대치가 가능하다. 오늘날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이 여기 속한다. 그 외에도 의식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몸이 없는 생물체나, 식물 또는 중앙 신경조직이 없는 동물로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생물체를 말한다. 이 존재들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인간들이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어떤 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식물과 바다와 강, 그리고 인간의 예술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싱어는 의식이 없는 생명체를 그의 실천윤리학 1판에서는 인격체의 문제와 함께 논의했으나 2판에서는 따로 떼어 기술하고 있다. 위의 책, 114f. 131f. 311ff. 참조. A. Vieth, Einführung in die Angewandte Ethik, Darmstadt 2007, 133f.

40)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1999, 27.

41) 위의 책, 28f.

42) P. Singer, 『실천윤리학』, 150.

43) 그런 점에서 싱어는 인간이 동물이나 기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체에게 도덕적 의무 더 나아가 인간과 평등하게 대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감정중심적 입장에서 서 있다. P. Mayr, *Das pathozentrische Argument als Grundlage einer Tierethik*, Münster 2003, 234ff.

44)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308.

세계 속에서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히 동물 중을 유인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서열화할 위험성이 있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은 싱어가 정의한 인격체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대 유인원 프로젝트 제1항이 명시한 생명권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돌핀, 고래와 같이 자의식을 갖는 다른 동물들은 유인원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더욱이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제2항과 제3항은 반드시 인격체에만 한정된 권리라 볼 수 없다. 이 권리는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에게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 유인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권리를 오직 세 유인원에게만 한정적으로 수여함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원론을 낳게 되었다. 소머의 말과 같이 인간중심주의가 유인원중심주의(Hominidaeism)로 대치될 수 있다.<sup>45)</sup>

둘째, 싱어의 이익관심 또는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한 평등론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이익관심이라는 단어도 너무 추상적인 개념임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이익관심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다 동등하지도 않다. 그런 이유에서 이익관심을 세분하여 기본적 이익관심과 부수적 이익관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듯 서로 상충하는 동물들의 이익관심을 명확히 판가름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굶고 있는 늑대의 이익관심과 거대한 순록 떼에 속한 한 마리의 순록의 이익관심 중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sup>46)</sup> 이익관심이란 말은 개념적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남의 물건에 대한 도둑의 관심이 정당화될 수 없듯 모든 관심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싱어도 평등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님을 정당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싱어가 동물의 고통을 평등의 원리에 응용할 때 그는 사실적인 것에 근거해 평등의 원리를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일치성과 유사성에 근거해 평등을 요구하는 대신 어떤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과의 차별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모든 이의 관심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의 주장은 복잡한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주장이다. 싱어는 육체를 영혼과 구분하는 이분법에 사로 잡혀있고 이를 근거로 인격체와 비 인격체 간의 새로운 이분법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계층적이며 도구적인 경향이 정당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배의 메커니즘이 비판되기는 커녕 새롭게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인간과 동물의 평등에 대한 주장도 비슷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그 몸의 형태에 있어서나 태도의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물론 동물도 서로 같지 않으며 동시에 그렇다고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생명체는 닮은 점이 있지만 구별된다. 싱어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자신이 제시한 가치개념 아래로 수렴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타자를 평가절하하고 어떤 고유한 것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셋째, 싱어의 실천윤리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유전적 곱해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지지자들은 유전적 치료와 유전적 간섭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시장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선호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생학을 규범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이와 같은 태도를 출생 이전의 인간생명을 사물화하는 실천의

45) V. Sommer, *Von Menschen und anderen Tieren. Essays zur Evolutionsbiologie*, 55. 기타 K. P. Rippe, “Tierethik”, M. Düssel; K. Steigleder, *Bioethik*, Frankfurt am Main 2003, 405-411.

46) 이는 데자르맹의 질문이다. J. R. DesJardins,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1999, 202ff.

외설성(das Obszöne einer verdinglichenden Praxis)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대해 자기도취적으로 집착하기 위해 규범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토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sup>47)</sup> 오늘날 유전학자들이 인간유전자를 해명하고 조작하면서 자연발생적인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의 범주적 차이가 무의미한 것이 되었듯,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이라는 표어 하에 인간과 동물 간의 차별성 없는 평등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종만이 아니라 동물의 종의 정체성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유전적 공동체주의를 주장한 부캐넌(Buchanan)의 예언은 매우 어두운 인류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동안 인간자연(human nature)이라고 간주되던 것의 단일한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집단이 유전공학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각기 자신만이 자연을 지닌 다양한 존재자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들은 서로 단지 공통의 선조(인간 류)를 통해서만 연관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양한 동물 종들이 공통의 선조로부터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 것과 비슷한 것이 될 것이다.”<sup>48)</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본질에 대한 인식을 기원에 대한 설명과 혼동하고 있다.<sup>49)</sup> 철학적 인간학의 과제는 인간의 동물성을 부인함 없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숙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 VI. 나가는 말

대 유인원 프로젝트를 도덕적, 법적 규범의 실천가능성의 문제와 연관해 볼 때 이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인권이념이 철학적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에서 법제화 과정을 거쳐 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사회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싱어도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유엔과 같은 국제적 조직체의 필요성 인지하고 이 선언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였다.<sup>50)</sup>

오늘날 인간의 생활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론과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상을 유기적 자연과 비유기적 자연으로 구분하고 동물적 자연본성과 인간의 이성적이며 사회적 자연을 구분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이론적 태도, 기술적 태도, 그리고 실천적 태도로 나누었다.<sup>51)</sup> 그러나 인류가 자연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행위영역이 과학적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구별과 경계도 허물어지게 되었다.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기본이념도 진화생물학, 진화유전학, 비교심리학 등이 밝혀낸 인간과 타 생명체 간의 지속적 연관성에 근거해 유인원의 이익관심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하며 새로운 벽허물기를 시도하였다. 대 유인원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인간적이며 문화적인 유인원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인간과

47) J. Habermas,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장은주 역, 나남출판 2002, 53.

48) 위의 책, 83에서 재인용.

49) 이에 대해서는 요나스의 입장을 참조하라. H. Jonas, “Wekrzeug, Bild und Grab. Vom Transanimalischen im Menschen”, H. Rössner, *Das anthropologische Defizit*, München 1986, 67-80.

50)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310f.

51) J. Habermas,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87f.

유인원 사이의 근사치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첫째, 유인원과 같은 특징을 갖지 못한 다른 생명체는 평등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함으로 결국 다른 동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유사성과 함께 차이점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근거해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편성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두프레(J. Dupré)의 지적과 같이 이는 많은 부분 중 사소한 한 단면일 뿐이다.<sup>52)</sup> 결론적으로 싱어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호공리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평등성의 기초 위에서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계층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싱어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불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싱어의 생명윤리적 이론은 결국 인격과 비인격간에 새로운 이분법을 낳고 이는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창조성의 총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하고 말았다. 이는 필자의 다음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sup>53)</sup>

## 참고문헌

- Bastian, T., 『가공된 신화, 인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사유하다』, 송성현 역, 시이출판사 2005.
- Beat, S. L., “Tierrecht und ihre Grenzen”, Löw, R.; Schenk, R.(hg.), *Natur in der Krise. Philosophische Essays zur Naturtheorie und Bioethik*, Hildesheim, 1994, 81-112 참조.
- Becker-Schmidt, R., “Frauen und Deklassierung - Geschlecht und Klasse”, B. Ursyla(hg.), *Klasse Geschlecht. Feministische Gesellschaftsanalyse und Wissenschaftskritik*, Blelefeld, 1989, 231.
- Cavaliere P. u. Singer, P.,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dt: *Menschenrechte für die Großen Menschenaffen. Das Great Ape Projekt*, München 1996.
- Cavaliere P., *Die Frage nach den Tieren. Für eine erweiterte Theorie der Menschenrechte* Erlangen, 2002.
- Cavaliere, P.; Singer, P., “The Great Ape Project”, Kuhse, H.(ed.), *Unsanctified Human Life. Essays on Ethics* Peter Singer, Blackwell, 2002, 128-141;
- Cohen, C; Regan, T, *The Animal Rights Debate*, Lanham 2001.
- Cole, G., “Singer on Christianity: Characterized or Caricatured?”, Preece, G, *Rethinking Peter Singer. A Christian Critique*, Inter Varsity Press 2002, 95-105,
- Dawkins, R., “Gaps in the Mind”, Cavaliere, P.; Singer, P.,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80-87.
- Dawkins, R., 『악마의 사도』, 이한음 역, 바다출판사, 2005.
- Dawkins, R., 『조상이야기.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이한음 역, 까치 2005.
- DesJardins, J. R.,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1999.
- Diamond, J., *The Third Chimpanzee*, Cavaliere, P.; Singer, P.,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88-101.
- Dupré, J., *Darwins Vermächtnis. Die Bedeutung der Evolution für die Gegenwart des Menschen*, Frankfurt

52) J. Dupré, *Darwins Vermächtnis. Die Bedeutung der Evolution für die Gegenwart des Menschen*, Frankfurt am Main. 2005, 76ff.

53) G. Cole, “Singer on Christianity: Characterized or Caricatured?”, G. Preece, *Rethinking Peter Singer. A Christian Critique*, Inter Varsity Press 2002, 95-105,



- am Main 2005.
- Düwell, M; u.a.(hg.), *Bioethik. Eine Einführung*, Frankfurt am Main 2003.
- Engels, E. M., “Humanität und Ethik für das 21. Jahrhundert. Zum Mensch-Tier-Verhältnis. Herausforderungen und Perspektiven, Reinalter”, H., (hg.), *Humanität und Ethik für das 21. Jahrhundert*, Innsbruck 2004, 77-100.
- Flury, A., *Der moralische Status der Tiere. Henry Salt, Peter Singer und Tom Regan*, Freiburg; München 1998.
- Goodall, J., *Ein Herz für Schimpansen - Meine 30 Jahre am Combe-Strom*, Hamburg 1991.
- Habermas, J.,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장은주 역, 나남출판 2002.
- Heinzlmann, C., *Der Gleichheitsdiskurs in der Tierrechtsdebatte. Eine kritische Analyse von Peter Singers Forderung nach Menschenrechten für Große Menschenaffen*, Stuttgart 1999.
- Herberhold, M.; u.a(hg.), *Menschenrechte für Menschenaffen? Was Tier und Mensch unterscheidet*, Paderborn 2003.
- Hoerster, N. *Haben Tiere eine Würde? Grundfragen der Tierethik*, München 2004.
- Höffe, O., *Moral als Preis der Moderne. Ein Versuch über Wissenschaft, Technik und Umwelt*, Frankfurt am Main 1993.
- Ishay, M.,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길 2005.
- Janowki B. u. Riede, P.(hg.), *Die Zukunft der Tiere: Theologische, ethische und naturwissenschaftliche Perspektiven*, Stuttgart 1999.
- Korff, K.; u.a.(Hg.), *Lexikon der Bioethik: 3 Bde.*, Gütersloh 1998.
- Krebs, A.,(hg.), *Naturethik: Grundtexte der gegenwärtigen tier- und ökoethischen Diskussion*, Frankfurt am Main 1997.
- Leimbacher, J., *Die Rechte der Natur*, Basel und Frankfurt a. M., 1988, 140이하.
- Liechti, M.(hg.), *Die Würde des Tieres*, Erlangen 2002.
- Linnemann, M.,(hg.), *Brüder - Bestien - Automaten*, Erlangen 2000.
- Linzey, A.; Yamamoto, D., *Animals on the Agenda. Questions about Animals for Theology and Ethics*, London 1998.
- MacKonnon, C., “Kriegsverbrechen-Friedensverbrechen”, S. Stephen; H. Susan(hg.), *Die Idee der Menschenrechte*, Frankfurt am Main 1996, 104-143.
- Maihofer, A., “Der Ausschluß der Frauen aus den Menschenrechten - Die Menschenrechtserklärung von 1789 aus feministischer Perspektive”, *Frankfurter Hefte* 6/1989, 626-636.
- Mayr, P., *Das pathozentrische Argument als Grundlage einer Tierethik*, Münster 2004.
- Pauer-Studer, H., *Einführung in die Ethik* Wien, 2005.
- Rachels, J., Why Darwinians Should Support Equal Treatment for Other Great Apes, P. Cavaliere; P. Singer, *The Great Ape Project. Equality beyond humanity*, London, 1993, 152-157.
- Reich, W. T.(Ed.), *Encyclopedia of Bioethics: 4.Bde.* (New York 1978 ~ 82);
- Rippe, K. P., “Tierethik”, Düssel, M.; Steigleder, K., *Bioethik*, Frankfurt am Main 2003, 405-411
- Rogers, L.; Kaplan, G., ALL ANIMALS ARE NOT EQUAL. The Interface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Legislation for Animal Rights, Sunstein, C. R.; Nussbaum M. C.,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2004, 179-202.
- Schmidt, W. R., *Der Schimpanse im Menschen - das gottebenbildliche Tier*, Gütersloh 2003.
- Schröder, M. W., “Menschenaffen und Rechte. Kritische Bemerkung zur Deklaration über die Großen

- Menschenaffen von P. Cavalieri und P. Singer”, 399.
- Singer, P. All Animals are Equal, Kuhse, H.; Singer, P., *Bioethics: An Anthology*, Oxford 1999, 461-470.
- Singer, P.,(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1991.
- Singer, P.,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1999.
- Singer, P., 『삶과 죽음』, 장동익 역, 철학과 현실사 2003.
- Singer, P., 『실천윤리학』, 황경식 외역, 철학과 현실사 1997.
- Sommer, V., *Von Menschen und anderen Tieren. Essays zur Evolutionsbiologie*, Herzel, 2000, 53ff.
- Sunstein, C. R.; Nussbaum M. C.,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2004.
- Teutsch, G. M., *Die 'Würde' der Kreatur: Erläuterungen zu einem neuen Verfassungsbegriff am Beispiel des Tieres*, Bern 1995.
- Teutsch, G. M., Die “Würde der Kreatur”. Erläuterungen zu einem neuen Verfassungsbegriff am Beispiel des Tieres, Bern 1995.
- Teutsch, G., *Mensch und Tier - Lexikon der Tierschutzethik*, Göttingen 1987.
- Tomasello, M., *Die kulturelle Entwicklung des Menschlichen Denkens*, Frankfurt am Main, 2002.
- Vieth, A, Einführung in die Angewandte Ethik, Darnstadt, 2007.
- Waal, F. B. M. de, *Der gute Affe. Der Ursprung von Recht und Unrecht bei Menschen und anderen Tieren*, München 2002.
- Waal, F. B. M. de, 『내 안의 유인원』, 이충호 역, 김영사 2005.
- Waal, F. B. M. de, 『원숭이와 초밥요리사』, 박성규 역, 수희재 2005.
- Waal, F. B. M. de, 『침팬지 폴리티क्स』, 황상익 외역, 바다출판사 2004.
- Waal, F. B. M. de; Lanting, F, 『보노보』, 김소정 역, 새물결 2003.
- Wolf, U., *Das Tier in der Moral*, Kolstermann, 2004.
- Wuketits, F. M., *Der Affe in uns. Warum die Kultur an unserer Natur zu scheitern droht*, Stuttgart 2002.
- Wuketits, F. M., *Was ist Soziobiologie?*, München 2002.
- Wuketits, F. M., 『멸종. 사라진 것들』, 두행숙 역, 들녘 2003.
- Wuketits, F. M., 『사회생물학 논쟁』, 김영철 역, 사이언스북스 1999.
- Wuketits, F. M., 『자연의 재앙. 인간』, 박종대 역, 시아출판사 2004.
-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건국대출판사 2005.
- 김형민, 동물의 미래와 기독교 신앙, 기독교사회윤리 제3집 2000년, 131-168.
- 김형민, 진화윤리학의 규범적 논증의 가능성, 종교연구 제32집 2003년 가을, 131-154.
- 한면희, 『환경윤리. 자연의 가치와 인간의 의무』, 철학과 현실사 1997.

